

창원지방법원 2024. 9. 24 선고 2022가단62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B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C

원고보조참가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D, E

피 고 F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광호

변 론 종 결 2024. 8. 13.

판 결 선 고 2024. 9.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2021. 12. 29. 접수 제6300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21. 12. 28.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을

부인한다’는 취지의 청구취지를 함께 기재하였으나, 부인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는 부인의 법률적 효과로서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반환 등을 구하는 것으로 충분하므로 무익적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본다).

이 유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 기재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와 B 사이의 상속재산 협의 분할계약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함) 제291조 제1호에 의하여 부인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수익자인 피고가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가 선의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고의부인 이외에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4호, 제392조에 따른 무상부인도 함께 주장하고 있고, 무상부인의 경우는 수익자의 악의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결론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예연

별지